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15433
----------	-------

제안연월일 : 2025. 12.

제안자 : 기획재정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의안명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제출자)	발의일 (제출일)	경과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9187	박대출의원	2025. 3. 20.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2025. 9. 8.)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경제재 정소위원회 회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3714	박민규의원	2025. 10. 27.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 직접 회부 (2025.12.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3761	안도걸의원	2025. 10. 28.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 직접 회부 (2025.12.1.)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6차 경제재정소위원회(2025. 12. 4.)에서 위 3
건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
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9차 기획재정위원회(2025. 12. 4.)에서 경제재
정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 3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

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가. 조달청장이 불공정 조달행위로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직권으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제1항).
- 나. 수요기관의 장이 수요물자 조달과정에서 계약상대자등에게 부당한 계약조건을 제시하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한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조달청장은 이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수요기관에 시정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2 신설).
- 다. 조달청장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 방해 · 기피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35조제1항 신설 등).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접수하고,”를 “접수하고”로, “경우”를 “경우 또는 조달청장이 불공정 조달행위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으로, “이 조”를 “이 조 및 제21조의2”로 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계약상대자등에 대한 부당요구 등 금지) ① 수요기관의 장은 수요물자 조달과정에서 계약상대자등에게 부당한 계약조건을 제시하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한 부당한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이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를 통하여 해당 수요기관에 시정요구, 제도개선 권고, 재발방지 요청 등을 할 수 있다.

제35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1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

출한 자

2. 제21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

피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p>제35조(과태료) <신 설></p> <p>① (생략)</p> <p>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장이 부과·징수한다.</p>	<p>부당요구 등 금지) ① 수요기관의 장은 수요물자 조달과정에서 계약상대자등에게 부당한 계약조건을 제시하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한 부당한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②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이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를 통하여 해당 수요기관에 시정요구, 제도개선권고, 재발방지 요청 등을 할 수 있다.</p> <p>제3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제21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2. 제21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p>② (현행 제1항과 같음)</p> <p>③ 제1항 및 제2항----- ----- -----</p>
--	--

